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시 제재 강화〉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54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시 제재 강화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민수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6. 20.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어 더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그 처리 제한을 강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형사처벌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보다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그 제재수준이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재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요건을 기존 고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죄형법정주의 위반 우려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제1항제3호, 제71조제5호, 제75조제2항제7호 삭제).

Ⅲ. 검토의견: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시 제재 강화

□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시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기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 고시에서 상향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1항제3호, 제71조제5호 및 제75조제2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u>보호위원회가 고시</u> 로 정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u>대통령령으로</u>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u>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u>고유식별정보</u>를 처리한 자</u>	제71조(벌칙)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24조제1항·제24조의2제1항</u> ----- ----- -- <u>고유식별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u>

6. ~ 10. (생 략) 제75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7. 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8. ~ 27. (생 략) ③ ~ ⑤ (생 략)	<u>호를</u>----- 6. ~ 10.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8. ~ 2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 제2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①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¹⁾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②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고 있고, 법 제71조제5호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²⁾

- 한편, 법 제24조의2제1항은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①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이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제한 사유를 강화하고 있고, 법 제75조제2항제7호는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³⁾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그런데, 현행법상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반면,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제재수준이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제재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

○ 또한,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요건 중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 제71조제5호에 따른 형사처벌 구성요건이 고시에 따라 결정되지 않도록 하여 죄형법정주의 위반 우려를 완화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먼저, 주민등록번호가 고유식별정보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현행법을 따르더라도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 법 제71조제5호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개정의 실익이 적음.

7. 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⁴⁾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에 포함되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 제71조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등 제24조제1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75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됨.
- 이는 현행법이 주민등록번호의 보호를 다른 고유식별정보보다 더욱 강화함으로써 관행적 동의 절차에 따른 오·남용과 2차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⁵⁾을 고려할 때,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시의 제재수준을 고유식별정보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상으로도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24조의2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서는, 보호위원회는 현행법이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사유를 보호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한 것은 제1호 및 제2호가 규율하지 못하는 부분을 포괄하는 유연한 규율체계를 마련한 것으로서 고시로 규정될 필요가 있고, 제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2020.12)」, p.171

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이미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호에서 대통령령을 별도로 규율할 필요성이 적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다만, 개정안과 같이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를 고려하여 형사처벌 구성요건이 고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고, 안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은 헌법 또는 법률상 위임이 필요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08
